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07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이용우 · 박용갑 · 윤준병
윤종균 · 이수진 · 김한규
정태호 · 진성준 · 오세희
남인순 · 박균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출산이나”를 “임신 또는 출산이나”로 하고, 같은 목 1) 중 “출산과”를 “임신 또는 출산과”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해당 자녀의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을 “급여 전액.”으로 하며,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는 급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3. ----- -----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u>출산이나</u>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 급받는 다음의 급여	며. ----- <u>임신 또는 출산이나</u> ----- ----- -----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u>출산</u> <u>과</u> 관련하여 <u>자녀의 출</u> <u>생일 이후 2년 이내에</u>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 급받는 <u>급여(2021년 1월</u> <u>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u>	1) ----- ----- ----- ----- <u>임신</u> <u>또는 출산과</u> ----- <u>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방법에</u> <u>따라 임신 사실이 확인</u> <u>된 날부터 해당 자녀의</u> <u>출생 후 2년이 되는 날</u> <u>까지</u> ----- <u>급여 전액.</u> <u>다만, 유산 또는 사산한</u>

<u>대하여 2024년 1월 1일</u> <u>부터 2024년 12월 31일</u> <u>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u> <u>포함한다) 전액 <단서</u> <u>신설></u> 2) (생 략) 버. ~ 처. (생 략) 4.·5. (생 략)	<u>경우에는 임신 사실이</u> <u>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u> <u>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u> <u>받는 급여로 한다.</u> 2) (현행과 같음) 버. ~ 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	--